

업무구분	단위업무	1.2 전임직교원 정기 교원인사 (승진, 재임용, 정년보장 임용 등)		
교원인사	작성일자	2021.9.	연락처	2491

1. 업무개요

- 가. 업무내용 : 공과대학 소속 정기 교원인사(승진, 재임용, 정년보장 임용 등) 관련 절차·기준 및 추천에 관한 업무
- 나. 발생시기 : 매년 3~8월, 9~2월
- 다. 관련근거 : 교원인사운영요령 등

2. 업무처리절차



3. 업무처리내용

- 1) 교원인사 심의일정 안내
 - 학과, 단과대학 및 교원인사위원회 각 단계별 심의일정과 심사 구비서류, 기타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기준을 수립하여 학과 및 단과대학에 안내
 - 학과/단과대학에서는 재임용심사대상자(정년보장시한 심사대상자, 직급정년 승진심사대상자 포함)에 대하여 6개월 전 심사대상자임을 통보
- 2) 심사자료 제출
 - 심사대상자는 9월말(3월1일부), 3월말(9월1일부)을 기준으로 심사자료(소정양식)를 작성하여 해당학과에 제출
- 3) 학과 교원인사심의회 심의 및 학과장 추천
 - 학과 교원인사심의회에서는 심사대상자의 교육, 연구, 기여봉사 실적 등에 대하여 종합 심사함.
 - 학과장이 개별 심사대상자에 대한 채점표 및 Cover Letter를 작성하여 단과대학 교원인사심의회로 심의 의뢰함. 다만, 직급정년 승진심사대상자를 제외한 승진심사 미추천자의 경우에는 심의 의뢰하지 않음.
- 4) 단과대학 교원인사심의회 심의 및 단과대학장 추천
 - 단과대학 교원인사심의회에서는 심사대상자의 교육, 연구, 기여봉사 실적 등에 대하여 종합 심사함.
 - 단과대학장이 개별 심사대상자에 대한 채점표 및 Cover Letter를 작성하여 본부 교원인사심의회로 심의 의뢰함. 다만, 직급정년 승진심사대상자를 제외한 승진심사 미추천자의 경우에는 심의 의뢰하지 않음.
- 5) 교원인사위원회
 - 심의대상자의 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채점표를 작성하여 승진, 재임용, 정년보장 임용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함.
- 6) 임용확정 및 통보
 -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진, 재임용, 정년보장임용 여부 등을 확정(내부결재)함.
 - 임용 결과는 해당교원, 소속 학과장 및 단과대학장에게 임용예정 2개월 전 통보함.
- 7) 교원소청심사위원회
 -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결과 각각의 임용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심의과정(교원인사위원회)에서 15일간 소명기회 부여
 - 이후 최종 교수직 상실 대상자임을 통보 받은 교원은 통보를 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.
- 8) 인사발령
 - 인사팀에 3월 1일 부 또는 9월 1일 부 발령요청
- 9) 이의신청 및 재심의
 - 교수직 상실이 아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인사발령 후 21일 이내에 교원인사위원회로 재심의 신청
 -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60일 이내에 재심의 후 그 결과를 통보함.
- 10) 이사회 보고
 - 이사회에 재임용, 승진임용, 정년보장임용 등 보고(년 2회)

4. 관련 규정

- 가. 교원인사운영요령

5. 활용서식

- 가. 교원 인사심의 주요업적 기술서
- 나. 교원인사 평가 및 채점표

6. 기타 주요 참고사항

- 공과대학 정기인사 4월 및 10월별 심의 절차 예시

심의 절차	3.1부 시기	9.1부 시기
◦ 심사 대상자 통보(총장 명의) 및 인사심의 일정 안내	2021.8월말 [단과대학/학과]	2021.2월말 [단과대학/학과]
◦ 학과 교원인사심의회 심의 및 학과장 추천 - KI연구소장 추천(KI핵심교수), 겸임학과장 추천(겸임교수)	2021.10.1.(금) [학과]	2021.4.2.(금) [학과]
◦ 단과대학 교원인사심의회 심의 및 단과대학장 추천 - 심사 대상자 Case Book 교무팀 송부	2021.10월말 [단과대학]	2021.4.23.(금) [단과대학]
◦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- 재임용 탈락 등 교수직 상실 관련 대상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명 진술 기회 부여	2021.11월 중순~12월 중순 [교원인사위원회/교무팀]	2021.5월 중순~6월 중순 [교원인사위원회/교무팀]
◦ 심의결과 확정 및 통보 - 해당교원, 학과장 및 단과대학장에게 통보	2021.12월말 [교무팀]	2021.6월말 [교무팀]
◦ 인사발령	2022. 2월중 [교무팀/인사팀]	2021.8월중 [교무팀/인사팀]
◦ 이의신청 - 발령일로부터 21일 이내, 단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명 진술한 자는 제외	2022. 3. 21일까지 [해당교원, 학과/단과대학]	2021. 9. 중까지 [해당교원, 학과/단과대학]
◦ 이의신청 재심의 및 결과 통보 - 해당교원, 학과장 및 단과대학장에게 통보	접수일부터 60일 이내 [교원인사위원회/교무팀]	접수일부터 60일 이내 [교원인사위원회/교무팀]

- 재임용 기간

구분	2006.12.31.이전임용교원	2007.1.1. 이후 임용교원
임용기간	- 조교수는 3년 이내, 부교수 및 교수는 5년 이내 - 교수로서 7년 이상 근속하고 교육연구실적이 우수하여 정년보장으로 임용된 경우 정년까지	- 모든 계약은 3년 이내로 하고 신규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정년보장교원 임용 이전까지 총 계약 기간은 8년 이내 - 정년보장 임용 시 정년까지
기타	- 재임용심사 탈락할 경우 면직, 다만 최대 1년간 1회에 한하여 한시적 임용 가능 - 정년보장심사에 탈락할 경우 계약기간 종료시 면직, 다만 잔여계약기간이 없는 경우 최대 1년간 1회에 한하여 한시적 임용 가능 - 여성교원의 경우 출산 또는 육아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2년 연장 가능	

• 승진심사 신청 최소요건

직급	승진심사 최소요건
교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교수로 4년 이상 재직(부교수 신규임용자는 2년) - 부교수 6호봉 이상인자(현직급에서 장기근속 호봉은 받은 경우 7호봉) - 박사학위 취득 후 인정경력년수 만 10년 이상
부교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조교수로 2년 이상 재직 - 부교수 4호봉 이상인자 - 박사학위 취득 후 인정경력년수 만 4년 이상

• 승진심사 감안사항

- 징계처분요구 및 징계의결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진행 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 (직위 해제인 경우 준용)
-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(금품 및 향응 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, 성폭력, 성희롱 및 성매매, 채용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) 동안 승진을 제한
 - 급·정직 : 18개월
 - 감봉 : 12개월
 - 견책 : 6개월
- 교원이 직급정년에 달하는 경우에는 승진 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며, 이에 해당하는 경우 현 직급으로 신분을 유지하며 승진임용은 징계처분에 따른 제한기간 또는 직위해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 다만, 징계처분 요구 및 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교원의 승진 심사는 징계처분 확정 이후에 실시

• 정년보장 임용시기

구분	2006.12.31.이전임용교원	2007.1.1. 이후 임용교원
임용시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수로서 7년 이상 근속 ※ 단 7년 이내 1회 심사기회 부여 - 1년 1회 심사 ※ 단, 신제도 선택하여 신청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규임용 시 또는 신규임용 후 8년 이내 - 1회에 한하여 심사기회 부여 ※ 조교수, 부교수, 교수 직급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임용심사 탈락할 경우 면직, 다만 최대 1년간 1회에 한하여 한시적 임용 가능 - 정년보장심사 탈락할 경우 계약기간 종료시 면직, 다만 잔여계약기간이 없는 경우 최대 1년간 1회에 한하여 한시적 임용 가능 - 여성교원의 경우 출산 또는 육아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2년 연장 가능 	